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19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홍기원 · 송옥주 · 김영배
허영 · 문진석 · 김교홍
윤종균 · 김태년 · 한민수
윤후덕 · 신영대 의원
(11인)

제안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 · 인종 · 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증진이나 군사적 교류 및 교육 · 훈련 등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 파견활동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

제를 제도화하여 법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국군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에 파견된 국군이 헌법을 준수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및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해외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시 생략 가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파견여부를 결정함(안 제5조).

다.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라. 개별 파견요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회가 파견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조).

마. 정부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파견 활동 중인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정부는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하고 철수시켜야 함(안 제10조).

사. 정부는 매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현황과 계획 등을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정부는 파견된 국군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국군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에 파견된 국군이 헌법을 준수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및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파견활동”이란 국군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 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군 파견부대”란 해외파견활동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 부대를 말한다. 이 경우 부대는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분대 수준 이상의 조직을 말한다.
3. “개별 파견요원”이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또는 그 군인들의 결함이나 연합을 말한다.

제3조(해외파견활동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국군의 해외파견을 추진함

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등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의 법적 지위의 보장 및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범위 안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사항은 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군의 해외파견의 결정) ① 정부는 특정국가나 국제연합 등으로부터 국군의 해외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대응동향, 파병지역의 정세와 임무 수행여건, 해외파견활동 소요예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단의 구성, 조사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군의 해외파견 여부, 파견의 목적·규모·기간·임무 등을 결정한다.

⑤ 정부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개별 파견요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국군 해외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는 제5조의 절차를 거쳐서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동의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의 필요성
3. 파견 지역
4. 파견되는 국군의 임무
5. 파견되는 국군의 규모
6. 파견의 기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개별 파견요원의 해외파견) ①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견 예정지역이나 임무가 전투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임무 수행 중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외교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부는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예정지역이나 임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예정지역이나 임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파견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동의안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파견동의안 처리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 정부는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현황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군의 파견 협의 등)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특정국 정부 및 국제연합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군의 파견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국군의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파견기간의 연장) 정부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파견활동 중인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하고 철수시켜야 한다.

1.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임무를 완수하는 등 더 이상 파견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는 경우

제11조(해외파견활동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된 국군의 임무가 완수되거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견 지역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안보상 파견부대의 신속한 국내복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파견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국회에의 활동 보고) 정부는 매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현황과 실적, 활동계획, 파견지역의 정세 등을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군인에게 해외파견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고예방대책) 정부는 파견된 국군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에

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에 의하여 해외파견활동을 위하여 파견된 국군(「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